



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국(Cal/OSHA)의 검사에 대해 알아 둘 사항

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국(Cal/OSHA)은 검사를 언제 실시하는가?

Cal/OSHA는 작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 위험에 대한 불만을 접수할 때나 사망 또는 작업과 관련된 중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고를 접수할 때 작업장 검사를 실시합니다. 고용주와 소방서 및 경찰서는 이러한 중대한 사고를 Cal/OSHA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. Cal/OSHA는 불만의 접수나 사고의 보고가 없을지라도, 또는 검사관이 작업장에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인지할 때 언제든지 표적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Cal/OSHA에 작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?

1973년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법(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3)은 모든 고용인에게 고용주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Cal/OSHA에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위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. 이러한 권리는 고용인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부여됩니다.

Cal/OSHA에 불만을 제기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반드시 기밀로 유지됩니다.

안전 또는 건강 기준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, 고용인의 신체에 상해를 위협하는 어떠한 위험이 있는 경우, 또는 고용인이 임박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든지 Cal/OSHA에 작업장 안전 또는 보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Cal/OSHA가 작업장 안전 및 보건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는 방식은 무엇인가?

Cal/OSHA가 작업장 안전 및 보건 불만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Cal/OSHA는 불시에 현장 검사를 수행하거나 고용주에게 서신을 보내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Cal/OSHA는 제기된 불만에 묘사된 위험요소를 포함한 불만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.

Cal/OSHA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요소에 관한 작업 관련 불만 사항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수행합니다. 서신에 의한 조사는 덜 중대한 위험요소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며 Cal/OSHA가 고용인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우려사항을 여러 고용주에게 훨씬 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고용주는 반드시 직장에 Cal/OSHA의 서신을 게시하여 고용인이 조사에 대해 알도록 해야 합니다.

Cal/OSHA 검사관이 현장 검사 중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?

불만, 사망 또는 사고로 인하여 Cal/OSHA 검사관이 현장 검사를 수행할 때, 검사관은 고용인과 대화하고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주 대표와 먼저 대화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 Cal/OSHA가 검사를 고용주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, 고용주가 제시된 불만의 사본을 보거나 불만의 출처를 알고자 하는 것도 허가되지 않습니다.

고용주 대표는 검사 중에 Cal/OSHA 검사관과 동행해야 합니다. 고용인과 그 대리인은 검사 중에 Cal/OSHA 검사관과 동행할 권리가 있으며 검사관과 따로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.

Cal/OSHA 검사관은 피해자와 사고 목격자를 포함한 여러 고용인과 비공개로 질의응답을 합니다. 검사관은 또한 고용인에게 더 편리하다면 고용인이 검사관과의 대화를 다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
Cal/OSHA의 현장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?

고용주 대표와 고용인 대표가 참석한 경우, Cal/OSHA 검사관은 그들과 개회 회의를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작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검사하고, 사진을 찍고, 고용인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밀이 보장되는 질의응답을 수행합니다. 서면 프로그램, 교육 서류, 부상 및 질병의 기록과 같은 문서의 사본도 요청할 것입니다. 검사관은 작업장을 수차례에 걸쳐 후속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Cal/OSHA 현장 검사에서 검사관이 작업장을 떠나기 전에 고용주에게 관찰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위험 및 위반에 대한 예비 결과를 고용주에게 알립니다.

검사 또는 조사 후에 진행되는 일은 무엇인가?

현장 검사를 수행하고 요청된 모든 문서를 검토한 후에, Cal/OSHA 검사관은 고용주와 종료 회의를 열고 모든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소환장 및 벌금을 통지합니다. 고용주에게 소환장 서류철이 주어지는데, 여기에는 이의 제기 방법의 지침서 및 위험요소를 시정할 기한도 포함됩니다. 위반 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경우, 고용주에게 위반 사항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

불만을 제기한 고용인 또는 고용인 대표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 경우, Cal/OSHA 검사관은 이들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조사 결과를 알리고 고용주에게 소환장이 발급되었다면 그 사본도 첨부됩니다. 고용주는 최소 3일 동안 또는 위험요소 시정될 때까지의 두 가지 중에서 나중에 해당하는 날짜까지 위반이 발생한 위치 또는 그 근처에 반드시 소환장의 사본을 게시해야 합니다. 이는 작업 영역에 있는 모든 고용인에게 위험 요소를 알려서 그들이 불안정한 조건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에 대한 시정의 일정 계획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

서신으로 조사하는 경우에, 고용주는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요소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는 Cal/OSHA의 서신 사본과 이에 대한 고용주의 답변서를 게시해야 합니다.

만약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, 청문회가 열리는데 최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, 고용주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위험요소를 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

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?

Cal/OSHA는 일반적으로 현장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반이 발생한 때로부터, 또는 사고 조사의 경우에는 중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,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환장을 발부해야 합니다.